

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9. 23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.9.17. 채우진 의원 외 9명
- 나. 회부일자 : 2019.9.17.
- 다. 상정일자 : 제233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(2019.9.23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 : 김기석 의원】

가. 제안이유

자원재활용에 관하여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재활용 촉진하기 위한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구청장,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(안 제2조 ~ 안 제4조)
-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(안 제5조)
-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 등(안 제6조)
-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자 업무 등(안 제7조)
-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자 준수사항(안 제8조)
- 의류수거함 강제철거 등(안 제9조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○ 본 제정조례안은 채우진 의원 외 9인에 의해 발의되어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3항에 위임된 사항과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재활용 촉진을 권장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헌옷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, 사업자,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5조에서는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규격·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규정하였고,
- 안 제6조에서는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·관리자 지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
-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헌옷 재활용에 대한 수집·운반·처리 등과 의류수거함 설치로 인한 차량의 통행 및 구민불편 사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자의 업무 및 준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,
- 안 제9조에서는 불법 의류수거함 등에 대한 강제철거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검토의견으로는

본 제정조례안은 서울 2곳 지방 14곳이 조례로 제정되어 관리운영하고 있으며, 의류수거함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관리 등이 소홀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,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

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- 집행부가 올 초부터 의류수거함에 대한 관리 상태를 개선하고자 타 자치구 벤치마킹, 수거함 관리업체 면담을 통한 정비 및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보이며, 의류수거함 제작을 할 경우 단순 의류수거함을 넘어 디자인을 개선하고 의류수거함이 골목구석에 있는 점을 활용한 치안 벨을 부착하는 등 멀티기능 수행이 가능한 수거함으로 변화 되도록 타 자치구의 의류수거함 형태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